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웅식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성함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의 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서면
으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
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내문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고 반려동물 주인이 펫티켓(펫+에티켓)을 지키지 않아 다른 이용객들이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주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견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의 사전안내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혼란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표시>, <반려동물 동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문 설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관련 사항>이 표시된 안내문의 부착을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에게 의무하고자 하였으나,

입법검토결과 서울시가 지정·고시한 등록대상동물의 출입제한 장소에 대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출입금지 안내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의뢰된 내용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반려동물 출입가능여부 표시제’에 관하여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근거가 없으며 조례로 의무화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반려동물 출입가능 여부 표시제에 참여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